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22
----------	-------

발의연월일 : 2018. 9. 5.

발의자 : 김기선 · 홍일표 · 이종배
윤영석 · 유재중 · 곽대훈
김석기 · 이채익 · 권성동
함진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하여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비리가 문제되고 있음.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월~5월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자기 사업(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의 행위를 적발한 바 있음.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도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전기 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제21조(금지행위) ① -----</p> <p>-----</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 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u></p>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